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 자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에 있어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와 그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험물 반입신고 시 반입신고자에게 위험물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선사, 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점, 화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위험물하역업자도 하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험물 반입신고 관련 하역 정보제공 강화(안 제32조제4항)

위험물반입신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위험물 하역업자도 반입신고자에게 하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34조제1항)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 대상을 시행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목적에 맞게 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 제35조제1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는 자 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자의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달리 정하여 안전조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차: 2025. 12. 5. ~ 2026. 1. 14.,

2차: 2026. 7. 3.~ 8.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물”을 “위험물(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험물 하역정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제34조제1항 전단 중 “자”는 “자로서 위험물 하역의 규모·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다.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라.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마.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조치

제55조제6호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제2항제15호의2 중 “위험물을”을 “위험물 또는 위험물 하역정보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위험물을 통지하여야</u>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2조(위험물의 반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위험물(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험물 하역정보로 한다)을 통지해야</u>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u>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 ----- ----- <u>자로서 위험물 하역의 규모·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

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다.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라.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마.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 ⑥ (생략)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단 확보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조치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제1항제1호-----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u>13의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u>13의2.</u> (생 략)	<u>13의3.</u> (현행 제13호의2와 같음)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u>위험물을</u>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의2. ----- <u>위험물 또는 위험물 하역정보를</u> -----
16. ~ 22. (생 략)	16. ~ 2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연 락 처	(051) 773 - 5794